

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7.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9. 17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98.9.28)상정.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강길춘 보건소 서무과장)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과태료부과처분시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 이유제시, 처분전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행정절차법에 있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청취의 종류를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등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함에 우선 그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청문은 의견제출에 비해 국민에게 보다 중대한 권익제한을 하거나 의무부과를 하기전 거쳐야하는 절차로 허가취소, 법인의 해산명령, 폐쇄명령 등 개별 법령과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청회는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고 국민에게 광범위 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와 특정 구성원들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의견 제출은 청문또는 공청회를 제외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어 당초 청문절차를 의견제출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 9. 28 -----김인 위원

나. 수정이유 : 의견진술 기회부여에 있어 현행 행정절차법규정에 부합되게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을 첨가하여 명기토록 일부자구를 수정

다. 수정 주요골자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첨부 : 수정안 대비표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청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진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